역외 적용 범위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싱가포르: FSMA Part 9와 인바운드 규칙

싱가포르의 규칙은 두 방향으로 미칩니다. 아웃바운드 측면에서 금융서비스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FSMA) Part 9는 싱가포르 내 영업장에서 싱가포르 외부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라이선스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모두 해외에 있는 사업의 싱가포르 사무소도 규율 대상이 됩니다. MAS가 내세우는 이유는 FATF의 논리와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영업하면서 싱가포르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제공자는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는 반면, 그 위험은 싱가포르의 평판이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경과기간 없이 2025년 6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 MAS는 싱가포르에 있어야 할 상당한 이유와 완전한 준법 프로그램을 갖춘 신청인에게만 라이선스를 부여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실무상 인가 MPI의 그룹 법인과 소수의 다른 회사를 의미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시행일까지 싱가포르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여러 회사가 직원을 두바이나 홍콩으로 옮겼고, 다른 회사들은 싱가포르 법인이 인가받은 해외 계열사에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구조를 재편하였습니다.[1]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인바운드 측면에서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PSA)은 '싱가포르에서' 지급서비스 제공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MAS는 이 표현에 싱가포르를 겨냥한 마케팅, 싱가포르달러 표시 가격, 현지 지급망 또는 현지 언어 콘텐츠를 통해 싱가포르 거주자를 권유하거나 겨냥하는 외국 제공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투자자 경고 목록(Investor Alert List)에는 그렇게 한 외국 플랫폼들이 올라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겨냥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온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제공자는 MAS 자신의 지침에 따라 PSA의 적용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는 MiCA의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 논리와 같은 구조입니다.[2]

스위스: 자금세탁방지 적용 범위와 인바운드의 자유

스위스의 규칙은 자금세탁방지법(AMLA)과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통해 아웃바운드로 미칩니다. '스위스에서' 영업하는 금융중개업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습니다. FINMA와 법원은 이 표현에 고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스위스에 실질적 관리 장소나 고정사업장을 둔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반면, 스위스 법은 스위스에 거점을 두고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사업을 중개업자의 정의를 통해 포착합니다. 차이는 스위스의 사업은 SRO 가입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의 사업은 MAS가 부여하려 하지 않는 DTSP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해외 고객에게만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크 회사는 해외 고객을 둔 SRO 회원이며, 스위스는 이를 용인하고 감독합니다. 스위스의 입장은 더 관대하고 감독은 더 가볍습니다. 2025년 DTSP 제도를 피해 떠난 일부 회사가 추크로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3]

인바운드 측면에서 스위스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외국 제공자는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 활동에서 스위스 라이선스 없이 국경을 넘어 스위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관련 법률은 스위스 내 활동에 연결되며,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거래소는 법률상 의미에서 스위스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는 증권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금융서비스법(FinSA)의 영업행위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스위스 고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제공자에게 적용되며 그 고객 자문인의 등록을 요구합니다. 외국 거점에 관한 은행법 및 금융시장인프라법 규정도 한계가 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MPI는 스위스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지 않고 증권을 제공하지 않는 한, 스위스에 아무런 신고 없이 DPT 현물 서비스에 스위스 고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대칭성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스위스와 싱가포르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사실입니다. 스위스는 싱가포르 플랫폼을 받아들이지만, 싱가포르는 스위스 플랫폼이 아무도 겨냥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4]

고객 질문

"싱가포르 회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팀은 스위스에 둔 채, 추크에서 싱가포르 DPT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싱가포르 MPI는 상임이사, 준법감시인, 고객 자산 통제 및 의사결정을 싱가포르에 두어야 합니다. MAS는 이를 확인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술, 트레저리, 유럽 고객 사업을 추크에 두고, MAS가 검토한 아웃소싱 계약에 따라 이를 싱가포르 회사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가 활동에 대한 책임은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르 이사회가 계속 부담합니다. 추크 팀이 실제 경영진이라면 MAS는 첫 검사에서 이를 알아낼 것입니다. 스위스는 이와 별도로 추크 AG를 그 회사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싱가포르 고객에 대한 금융중개업자로 취급할 것입니다.

주

1. FSMA 2022, ss. 136 to 138 및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Regulations 2025. MAS, Response to feedback, 2025년 5월 30일, 및 해명, 2025년 6월 6일. 상세 내용과 디지털 토큰 서비스에 해당하는 항목의 목록은 제K편 제V장 참조. ↩
2. Payment Services Act 2019, s. 5(1). '싱가포르에서'의 의미와 권유에 관하여는 MAS,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the Payment Services Act. '공공장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소' 마케팅 규칙에 관하여는 MAS, Guidelines on Provision of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s to the Public (PS-G02), 2022년 1월 17일. ↩

3. 자금세탁방지법 제2조 제3항. 제재 결정으로 확인된 FINMA의 실무는 스위스에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외국회사를 스위스 금융중개업자로 취급한다. 제F편 제II장 참조. ↩

4. 금융서비스법 제3조 제a호 및 제28조(외국 제공자의 고객 자문인 등록). 외국 금융기관의 스위스 지점에 관한 금융기관법 제52조. 지급형 토큰 서비스에 대한 인바운드 라이선스 요건의 부재는 제E편 제II장에서 다룬다.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